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도 서 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,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며,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(안 제33조의2 신설)

나.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(별표 2)

다.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(별표 3)

라.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,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(별표 5, 별표 6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~)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

대통령령 제　　호

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공공도서관의 시설)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자료이용시설: 일반자료실, 디지털자료실, 어린이자료실, 장애인자료실 등
2. 문화교육시설: 강의실, 전시실, 동아리실, 독서토론실 등
3. 자료관리시설: 자료반입실, 정리실, 보존서고 등
4. 업무관리시설: 사무실, 문서보관실, 회의실, 전산실, 기계실 등
5. 이용편의시설: 주차장, 물품보관소, 구내식당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

별표 2 제1호가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”을 “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에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3호에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사립 공공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

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: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

라. 사립 어린이·장애인·노인·다문화가족 도서관: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

다. 사립 공공도서관: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

라. 사립 어린이·장애인·노인·다문화가족 도서관

1)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: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

2)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: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

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38조제1항제2호	시정요구	시정요구	등록취소

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”을 “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1호가목 중 “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”을 “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3조의2(공공도서관의 시설)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1. 자료이용시설: 일반자료실, 디지털자료실, 어린이자료실, 장애인자료실 등 2. 문화교육시설: 강의실, 전시실, 동아리실, 독서토론실 등 3. 자료관리시설: 자료반입실, 정리실, 보존서고 등 4. 업무관리시설: 사무실, 문서보관실, 회의실, 전산실, 기계실 등 5. 이용편의시설: 주차장, 물품보관소, 구내식당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
[별표 2] **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** (제28조제2항) 1. 사서 요건	[별표 2] **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** (제28조제2항) 1. ----------

가. 국공립 공공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1) ~ 2) (생략) 나. (생략) 2. 시설 요건 가. ~ 나. (생략) <신 설> <신 설> 3. 도서관자료 요건 가. ~ 나. (생략) <신 설> <신 설>	가. ----------(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----------) 1) ~ 2)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사립 공공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: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. 사립 어린이·장애인·노인·다문화가족 도서관: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. ----------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사립 공공도서관: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. 사립 어린이·장애인·노인·다문화가족 도서관

(이하 생략)

[별표 3]

행정처분의 기준(제30조 관련)

1. (생략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	2차	3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38조제1항제1호	등록취소		
나.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제1항제3호	시정요구	시정요구	등록취소
다.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·운영한 경우	법 제38조제1항제4호	시정요구	시정요구	등록취소
<신 설>				

1)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: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)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: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	

[별표 3]

행정처분의 기준(제30조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----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	2차	3차
가. ----------	----------	----		
나. ----------	----------	----	----	----
다. ----------	----------	----	----	----
라.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	법 제38조제1항제2호	시정요구	시정요구	등록취소

	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[별표 5] **사서의 배치기준**(제33조제1항 관련) 1. 국공립 공공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(이하 생략)	[별표 5] **사서의 배치기준**(제33조제1항 관련) 1. ----------(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----------)
[별표 6] **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**(제33조제2항 관련) 1. 시설 기준 가. 국공립 공공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: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(이하 생략)	[별표 6] **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**(제33조제2항 관련) 1. -------- 가. ----------(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----------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	
연 락 처	(044) 203 - 2618